

KAFA+ Advanced Program 교육생 모집 공고(7차)

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교육의 구성

- KAFA+ Advanced Program
현장영화인을 위한 **통합형 직무 재교육** 프로그램입니다.
교육은 108시간 기준(1일 6시간, 18일간)으로, 기획제작/시나리오/연출/촬영조명의 4개 직무 내용과 인문교양 교육을 진행합니다.
- KAFA+ Intensive Program
현장영화인을 위한 **직군별 집중 재교육** 프로그램입니다.
교육은 108시간 기준(1일 8시간, 14일간)으로, 기획제작/시나리오/연출/촬영조명의 4개 직군을 구분하여 집중 교육을 진행합니다.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

나. 교육명 : KAFA+ Advanced Program (7차)

다. 사업목적 : 현장 영화 스태프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훈련수당 지원을 통해 현장 영화 인력의 산업 내 이탈 방지 및 전문인력 배출

라. 사업내용

1) 사업개요 :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현장영화인 전문성 강화 재교육과 훈련수당을 지원

2) 교육기간 : 18일간 (1일 6시간, 총 108시간 교육 : 10시~13시 / 14시~17시)

3) 모집인원 : 현장영화인 40명 내외(훈련지원금 잔여분 적용)

4) 교육내용

- 직무기초 : 커뮤니케이션 개발/직무효능감 개발/저작권법의 이해

- 직무필수 : 현장영화인 성평등 교육

- 직무소양 : 한국영화산업의 이해/한국영화산업 트렌드 분석
영화산업 근로환경의 이해

- 직무역량 : 시나리오 작법, 시나리오 개발실무, 영화 프로듀싱, 영화 투자배급, 영화연출 스타일분석, 영화연출 시각화 실무, 촬영조명 기술동향, 촬영조명 기법분석 등

※ 강의 세부 내용은 교육생 선발 후 별도 공지 예정

5) 교육장소 : 한국영화아카데미 현장영화인 교육센터

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143 구)한국영화아카데미 사옥

마. 훈련수당 지급

- 1) 지급대상 : 교육 개시일 부터 훈련수당 지급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자 중 <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> 수료자
- 2) 수료자 기준 : 108시간 기준 15일(직무필수 포함 90시간)이상 출석자
- 3) 훈련수당 지급 : 수료자 대상으로 100만원(세전금액),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
- 4) 지급의 한도 : 1인 기준 년 1회

2. 모집내용

가. 지원자격 :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며, 교육기간 중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있지 않는 자

대상	자격기준	비고
현장영화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• 영화진흥위원회 ‘한국독립영화 인정’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※ KOBIS 크레딧 검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단편모음 크레딧 제외• 연기자 제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영화업 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현재 재직자 제외 (고용보험 납입자 제외)

※ 크레딧 검증은 ‘KOFIC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’ (www.kobis.or.kr) 검색을 기준함
※ 매회 교육신청자 자격기준 충족 검증 후, 교육인원 선착순 선발
※ 개봉 장편영화 중 단편모음/옴니버스 작품의 개별작품 크레딧은 인정하지 않음
※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은 연기자는 제외함
※ 영화진흥위원회 ‘한국독립영화 인정’ 장편영화는 2012년 7월분 인정부터 기준으로 함
※ 영화업은 영화제작업, 영화배급업, 영화수입업, 영화상영업에 한함
※ 신규 교육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며, 전년도 (전체)교육수료자는 전체 정원의 20%내외로 선발
※ 선발자 해당 반 정원의 1/3 미만일 경우, 폐강할 수 있음

나. 선발인원 : 현장영화인 40명 내외(훈련지원금 잔여분 적용)

다. 선발방법 : 선착순으로 선발

- 1) 본 사업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그 대상은 현장영화인과 영화산업 관련 기관, 업체, 단체 근로경력자를 우선으로 함
- 2) 자격적부심사는 제출서류의 자격증빙 검증으로 심사(KOBIS 영화인 검색 기준)
- 3) 영화진흥위원회 ‘한국독립영화 인정’ 장편영화는 2012년 7월분 인정작품부터 기준으로 함

- 4) 모든 신청서류 내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, 심사 및 선발에서 제외
- 5) 교육기간 및 훈련수당 지급기간까지 실업급여 수급자는 훈련수당 중복 수혜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됨
- 6) 신규 교육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며, 전년도 (전체)교육수료자는 정원의 20% 내외로 선발
- 7) 해당 반 선발자 수가 정원의 1/3미만일 경우, 폐강할 수 있음

라. 일정

- 1) 신청접수 : 2018.10.15.(월) ~ 10.22.(월) 18:00 마감
- 2) 심사선발 : 2018.10.23.(화) ~ 10.26.(금)
- 3) 선발발표 : 2018.10.29.(월)

영화진흥위원회,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

- 4) 교육기간 : 2018.11.05.(월) ~ 11.28.(수)

마. 제출서류

대상	제출서류
개봉 장편영화 1편이상 독립영화인정작 1편이상 크레딧 제출	① 교육신청서(양식) ② 크레딧캡처(양식) ③ 교육활용계획서(양식) ④ 개인정보활용동의서(필수)
영화업 관련회사 근로경력 1년이상	① 교육신청서(양식) ② 교육활용계획서(양식) ③ 경력증명서(1년 이상) ④ 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⑤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(1년 이상) ⑥ 개인정보활용동의서(필수)

바. 접수방법

1) 신청접수

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(www.kofic.or.kr) 회원가입 후 [세부진흥사업]-[진흥사업신청] - [현장영화인직업훈련교육-7회차]에 접수 및 서류제출

※ 마감일(10.22.월) 18시에 홈페이지 접수창 마감

※ 개인 회원가입자(등록자)와 직업훈련교육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.

※ 타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및 업체 또는 단체 등록자 신청은 반려함.

2) 서류제출방법

제출서류 작성 - 서명란에 전자서명 또는 인쇄하여 서명 - 스캔한 파일로 신청접수창에 업로드

3)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제출(영화업 관련회사 1년이상 근로경력자 해당)

고용보험사이트(<https://www.ei.go.kr>) - 개인회원가입-개인서비스 - 조회 -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(피보험자용) 출력

※ 근무경력과 고용보험가입 사업장명, 기간이 일치해야 함(공인인증서 사용)

※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내용 일치하여야 하며,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제출해야 함. 제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

4) 신청문의 : 한국영화아카데미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담당자

전화) 02-2039-8143~8144

이메일) kafaplus@kofic.or.kr

3. 사업관리

가. 교육 신청의 제한

- 1) 교육개시일로 부터 훈련수당을 받을 때까지 고용보험 납입,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불가
- 2)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신청불가
- 3) 영화진흥위원회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포함한 모든 지원사업 취소결정에 따른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자는 신청불가
- 4)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통보 없이 무단결석하여 수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년도 내에 동사업 신청불가(취업 등 교육참가 철회 사유통보시 제외)

나. 교육생 선발 취소 및 훈련수당 반환

- 1)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, 허위/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하며, 교육이 종료된 후 훈련수당을 받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함
- 2)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,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,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 대상으로

포함됨

다. 교육생의 의무

- 1)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,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,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
- 2) 출석관리는 강의별 수업시작과 종료 2번 확인함
- 3) 교육생은 지정된 출석확인 시간 외에 출석처리가 불가하며, 수업 시작 후 20분 이내에 출석해야 함. 20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
- 4) 교육생은 수업시간 종료 후에도 수업참석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함
- 5) 개인사유(병가 등)의 결석은 총 교육시간 중 20% 이내의 유예 시간에 포함하며, 별도의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
- 6) 교육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미출석으로 수료가 불가한 경우, 1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(미제출시 해당 년도 동 사업 신청불가 조치)

※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